

[약사법위반] 소아용 건조시럽에 적정용량의 2배 가까운 과량의 물을 넣어 불법 조제한

약사 - 징역 6월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3. 7. 선고 2017고단1387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약사가 약 3년 동안 소아용 건조시럽에 과량의 물을 넣어 적정농도의 절반 정도로 불법 조제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.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2. 관련 약사법 조항

약사법 제26조 (처방의 변경·수정)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

약사법 제9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5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

3. 판결이유 - 양형의 이유

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,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, 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. 그런데 약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런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긴바, 이는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다.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.

이상과 함께 범행의 기간,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정도,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첨부: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3. 7. 선고 2017고단1387 판결

약사변호사, 면허대여, 2중개설, 민형사소송, 행정소송, 전략적총괄대응, 실무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